

#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할 계획이오니 관심 있는 분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12월 24일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 1 채용 분야 및 지원 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 업무	지원 자격
경기도형 놀이지도사	1명	- 가치, 재미놀이 운영 - 육아정보제공 및 콘텐츠 지원 - 양육코칭 지원 - 찾아가는 놀이프로그램 운영 - 그 외 센터 업무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1년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u>스타렉스 운전 가능자</u>

## 2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전형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1. 12. 24.(금) ~ 2022. 1. 16.(일) 23:00까지	-마감일 도착시간 까지 유효함.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2022. 1. 17.(월) 14:00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2022. 1. 19.(수) 15:00	- <u>면접일시는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u>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1. 21.(금) 17:00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은 채용 신체검사 후 합격사유가 없을 시 최종 확정됨  
 ※ 채용인원 중 결원 발생 시 고득점순으로 충원할 수 있음

## 3 제출서류 및 접수처

입사 지원시 제출 서류	채용 후 추가 제출 서류
① 입사지원서-사진부착, 연락처 필수 기재 (첨부양식) ② 자기소개서 (첨부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첨부양식)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⑤ 자격증 사본 ⑥ 경력증명서 (전체 경력 삭제 없이 준비) ※제출서류 중 ①,②,③ 서류는 첨부된 양식 사용하여 제출 ※이메일 : <a href="mailto:yeojucare@naver.com">yeojucare@naver.com</a> 이메일 제목을 '놀이지도사지원-이름'으로 기재할 것 상기 서류는 접수기한 내에 이메일로 한 번에 제출함.	① 통장사본 ② 기본증명서 1부 ③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④ 공무원 신체 채용검사서 ⑤ 건강진단 결과서(구보건증) ⑥ 잠복결핵감염 검진확인서 ⑦ 반명함판 사진 1장

## 4 근로조건 및 보수기준

구분	내용
채용형태	-사업 기간 내 계약직 -2022. 2. 3. ~ 2021. 12. 31. ※ 경기도형 놀이지도사업 지속 운영 시 업무평가를 통해 재계약 가능, 사업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됨
보수기준	-급여: 2021년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수 기준에 준함. ※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근무시간	-일 8시간 지원근무(09:00~18:00) 휴게 1시간 포함. 주5일 40시간 근무
근무개시일 (입면일시)	-2022. 2. 3. (목) ※일정 협의하여 입면일 조정 가능

## 5 기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하며,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채용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1)「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 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3)「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기한 2년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문의) 여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883-2019

